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421

발의연월일: 2024. 9. 30.

발 의 자:이재강·정일영·허성무

이재정 · 채현일 · 박홍근

박희승 • 이성윤 • 한정애

유종군 • 민홍철 • 유건영

이건태 • 이용선 • 박지원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재외동포'의 범위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다 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규정하여 '무국적 재외동포'를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국권침탈과 강제이주 등 민족적 아픔과 일제에 함께 저항했던 연대의식을 공유하고 있는 재외동포에 대하여 출입국 및 국내 체류에 우대 혜택을 부여하려는 현행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단지 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무국적 재외동포에 대하여 '재외동포'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무국적 재외동포'에게도 재외동포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재외

동포의 법적 권리를 고양시키고 한민족 공동체에 대한 재외동포 공동 체의 관심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함(안 제2조제2호). 법률 제 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 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재외동	제2조(정의)		
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	2		
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			
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			
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直			
系卑屬)으로서 외국국적을 취	<u>대한민국 국적을</u>		
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	가지지 아니한 자 중 대통령		
<u>하는 자</u> (이하 "외국국적동포"	<u> 령으로 정하는 자</u>		
라 한다)			